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
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권덕철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·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794호, 2020. 12. 29. 공포, 2021. 6. 30. 시행)됨에 따라,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을 국립정신병원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안산·포항 트라우마센터 또는 국립정신병원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3. 17. ~ 4. 2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음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3제1항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4(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지정 및 운영) ① 보건복지부
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권역별 트라우마센터(이
하 “권역별트라우마센터”라 한다)의 설치·운영 업무를 법 제21조제1
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정신병원(이하 “국립정신병원”이라 한다)의
장에게 위임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권역별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35조에
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
2. 「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조에
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
3.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

③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,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건강증진시설,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국립정신병원

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10조의3”을 “제10조의3, 제10조의4”로, “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”을 “권한·업무를 위임·위탁받거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)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해당 권한·업무를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의2. 법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의3(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(이하 “국가트라우마센터”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0조의3(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제4항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0조의4(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지정 및 운영) ①</u>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권역별 트라우마센터(이하 “권역별트라우마센터”라 한다)의 설치·운영 업무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정신병원(이하 “국립정신병원”이라 한다)의 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권역별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</p>

1. 「4·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우마 센터

2. 「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조에 따른 포항트라우마 센터

3.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

③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 내 지방 자치단체,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건강증진시설,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13조(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의 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

제13조(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의 위탁) ① -----

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한 정신병원(이하 “국립정신병원”이라 한다)

2. 3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39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보건복지부장관(제10조, 제10조의3, 제13조, 제3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

-----.

1. 국립정신병원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-----
----- 제10조의3, 제10조의4-

----- 권한·업무를 위임·위탁받거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)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해당 권한·업무를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-----

수 있다. 다만,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.

1. ~ 3. (생략)

3의2.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에 관한 사무

3의3. ~ 17. (생략)

② ~ ⑤ (생략)

-----.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3의2. 법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

3의3. ~ 17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873